2024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24년 7월 1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신 성 환 위 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권 민 수 부총재보

박 종 우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지 호 조사국장 장 정 수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오 금 화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4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제28조 제3호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7월 1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지난 1월 11일 본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조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9조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음. 관련부서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향후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한시 특별지원의 운영기한 연장 여부에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취약부문의 여건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연장 기간은 1년이 적절하 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만 일부 위원들은 금번 연장 조치로 인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시화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다른 위원들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가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한만 연장하는 것인 만큼 보다 취약한 부문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 유보분 포함) 한도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은 9.3조원에서 9.0조원 감액한 0.3조원으로 하고, 총 한도는 30.0조원에서 9.0조원 감액한 21.0조원으로 한다.